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2. . .	
연월일	(제 회)	

수산업·어촌공익기능증진을
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 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직불금 지급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근거 규정과 배우자 승계규정을 신설하며, 지급대상자의 연령별 직불금 지급기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직접지불제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제출 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신청 및 선정절차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 상위법령에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신청 및 선정 관련 사업수행기관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개정함
- 나.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약정 해지·해제, 배우자 승계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과 배우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승계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
- 다. 경영이양직불금 지급기간 개선(안 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에 따른 지급기간은 신청당시 연령과 무관하게 최장 10년간으로 하되 지급 상한연령(만 85세까지)을 적용, 신청자의 소득안정을 보장함
- 라. 소규모어가직불금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규정 신설(안 제16조의

2 및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 소규모어가직불금 선정 신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의 종류, 선정 절차, 소규모어가직불금 지급 방법 등 소규모어가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마. 어선원직불금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규정 신설(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 어선원직불금 선정 신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의 종류, 선정 절차, 어선원직불금 지급 방법 등 어선원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2. 11. 9. ~ 12. 19.)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 없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읍·면·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읍·면·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읍·면·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55세”를 “60세”로, “조에서”를 “조 및 제11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인적사항”을 “인적사항 및 승계대상자(배우자에 한한다)의 인적사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약정의 상대방이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1에 따른 연령별”을 “10년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만 85세까지만 지급한다.

제12조제2항 중 “연령별 지급기간”을 “지급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면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11조의2에 따른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분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2.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어업면허·허가·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이 규칙 제6조제3항제2호의 수산물 위판정보 및 어선 입항·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4.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어가의 수산물 판매실적(위판, 사매매(私賣買)) 자료
5.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6. 영 제11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어가 내 모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어업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영 제11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어업자 또는 내수면 어업허가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8. 영 제1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어가 내 모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어선 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9. 영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어가 내 모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0.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1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

지 제19호서식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를 통해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등) 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이 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승선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선정신청인이 동의하면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2.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선 승선 근로계약서, 어선원 임금 통장사본 등 첨부 서류
3.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어선원 가구 내 모든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

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
을 증명하는 서류

5.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6.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서
를 검토하고 해당 신청인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인지를 확인
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
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
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서
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
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6(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
은 제16조의5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
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
의5제3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
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제외통보서로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7(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등) ①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이 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법 제18조의5제6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통장”을 “통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 원 직접지불금 간 중복하여 수 령한 경우	법 제21조제 1항제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 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 (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 다)이 다음 직접지불금 중 하나	법 제21조제 1항제9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를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른」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 직접지불금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 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 지불금을 받은 사람인 경우			
하.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준 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 제11조의 3제1항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거.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 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 제11조의 5제1항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별지 제5호서식의 기호(○) 중 “○읍·면·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소재지 읍·면·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소재지 읍·면·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읍·면·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55세”를 “60세”로 한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7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체 정보변경일	처리기간	60일
------	------	------------	-----------	------	-----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어촌계명:), (전화번호:)			
② 경영주인 어업인	어업 면허·허가·신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마을명:)	전화번호	신청유형	※ 안내문 참조	
			타 어업 종사	[] 면허, [] 허가, [] 신고	
③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배우자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❶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④-1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를 작성합니다.

❷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4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5쪽)"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에는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확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2. 어업 허가·신고,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⑥-1, ⑥-1는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자가 직접 적습니다.

신청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	-------	--------

※ (담당공무원)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의 사실을 모두 확인하여 적습니다.

※ (신청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어업유형 []에 V 표시하세요.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은 어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신청인)인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⑤-1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면허/허가[]						⑤-2 어업 허가[]							⑤-3 신고어업 []				⑥-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유형 (해당 여부에 따라 []에 V 표시합니다)			⑥-2 보유자 성명
성명	면허 번호	양식업 종류	양식장 면적	유효 기간	전년도 판매액 (천원)	성명	허가 번호	어업 종류	어선 톤수	어선 번호	유효 기간	선적항	성명	어업 종류	조업 구역	유효 기간	소규모어가 유형	해당 여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유형 (O, X)	
																	① 어가 구성원 전체 허가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연안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해당 []미해당		
																	② 어가 구성원 전체 허가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구획어업 허 가 보유 어업인	[]해당 []미해당		
																	③ 어가 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 가가 없는 해면 신고어업인	[]해당 []미해당		
																	④ 전년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금 액 미만의 양식수산물·수산종자를 판매한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면허/허가 보유 어업인	[]해당 []미해당		
																	⑤ 내수면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해당 []미해당		
																	⑥ 어가 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 가가 없는 내수면 신고어업인	[]해당 []미해당		
																	⑦ 기타	[]해당 []미해당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자격 유무	[]해당 []미해당		

⑥-1 '해당여부'란에는 어가 내 가족구성원 중 누구라도 해당되면 모두 표시합니다.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유형'란에는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유형 하나에만 O, 나머지는 모두 X 표시를 합니다.

⑥-2 '보유자 성명'란에는 해당되는 소규모어가 신청자격을 가진 가족구성원의 이름을 적습니다.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 란에 V 표시합니다.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에 따른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관련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양식업권관리대장·양식업권허가대장·어업허가대장·어업신고증·수산종자생산업허가대장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수산물 위판실적, 사매매실적·거래실적 등 어업등의 생산·수입·소득 관련 실적자료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 증명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어선원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어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탈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정보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어업(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어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농업공익직접지불금, 임업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어업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그 밖에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양식업권관리대장, 양식업권허가대장, 수산종자생산업허가대장, 어업허가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및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농업기본 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직접지불금, 육림업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수령 정보 등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선정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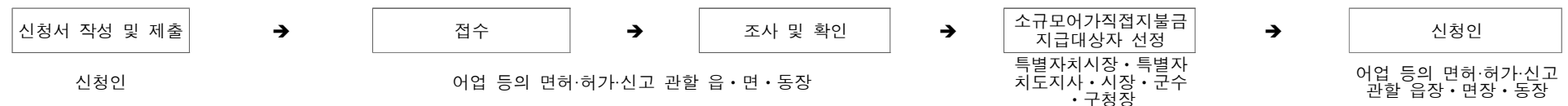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선정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어업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선정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선정·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신고, 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어구·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어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 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는 2쪽 상단에 작성합니다.
- ②와 ③의 경영주인 어업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④란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는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2. 어업 허가·신고,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신청인의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허가, 어업신고 등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 ⑤-1란은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보유 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성명란은 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가구 구성원 중 면허 보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전년도 생산액은 해당 양식업의 직접지불금 신청년도의 직전년도의 양식수산물판매액을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 ⑤-2란은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어업허가 보유 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성명란은 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가구 구성원 중 어업허가 보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선적항은 허가어선의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 ⑤-3란은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원의 어업신고 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성명란은 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가구 구성원 중 어업신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어업신고증 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⑥-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조건불리지역여부는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 '소규모어가 유형'란은 신청인 어가의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당 여부를 V 표시하면 됩니다.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 유형'란은 좌측의 소규모어가 유형 중 신청자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유형 한 곳에만 O, X로 표시합니다.
- ⑥-2란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구 구성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신청인 확인사항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이 읽어본 후 확인란에 V 표시하고, 서명합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를 확인한 후 신청인 및 신청인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공통사항(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양식업권관리대장, 양식업허가대장, 어업허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1조의2에 의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등)
- 2)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어업·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어업 허가, 양식업의 면허·허가, 어업 신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년도의 직전년도 1년간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한 위판정보
- 5)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년도의 직전년도 1년간의 3)호의 위판실적을 제외한 수산물 판매실적자료
- 6)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7)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지분형태로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의거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인 어가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9)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신청년도 직전년도의 신청인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 10)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른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 11)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른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1호·제2호·제6호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 1)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 어가 어선의 입항·출항 정보
- 2)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신청일 현재 신청인 어가 구성원이 소유한 전체 어선 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3호·제7호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 1)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신청인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 1) 신청인 가구 구성원 전체의 신청년도의 직전년도 1년간의 양식수산물 판매실적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1. 신청인 현황: 총 ○명(허가어업 ○가구, 면허어업 ○가구, 신고어업 ○가구, 기타 ○가구)

2. 지급대상자 명단: 총 ○명

연 번	시·군 · 구	읍·면 · 동	어촌 마을명	성명	생년 월일	어업 종류	신청 유형 (면허· 허가· 신고)	관련 서류 확인											
								주민 등록 등본	어업 허가 서류	양식업 면허 서류	어업 신고 서류	어업 경영체 등록	양식 수산물 판매 실적	어가 어업 수입	어업외 종합 소득	어업 종사 기간	어촌 거주 기간	기타	

3. 지급제외자 명단: 총 ○명

연번	시·군·구	읍·면·동	어촌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신청유형	제외사유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소규모어가 유형				
① 어가 구성원 전체 허가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연안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② 어가 구성원 전체 허가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구획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③ 어가 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없는 해면신고어업인	④ 1억 원 미만의 양식수산물 판매한 양식업 면허/허가 보유 어업인	⑤ 내수면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⑥ 어가 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없는 내수면 신고어업인	⑦ 1억 원 미만의 수산종자를 판매한 수산종자 생산 허가 보유 어업인	⑧ 기타		

위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18조의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19조 각 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지급대상 제외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 유형							
[] 해당란에 "√" 표시							
① 어가 구성원 전체 허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연안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② 어가 구성원 전체 허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구획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③ 어가 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없는 해면신고 어업인	④ 1억 원 미만의 양식수산물을 판매한 양식업 면허/허가 보유 어업인	⑤ 내수면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⑥ 어가 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없는 내수면 신고어업인	⑦ 1억 원 미만의 수산종자를 판매한 수산종자 생산 허가 보유 어업인	⑧ 기타
제외 사유							

* 위의 지급대상자 제외 사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체 정보변경일	처리기간	60일
------	------	------------	-----------	------	-----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 어선원인 어업인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마을명:)	전화번호	신청유형	※ 안내문 참조	
			타 어업 종사	[]면허, []허가, []신고	
③ 어선원 외의 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배우자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 어선원직접지불금은 **어가 내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④-1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를 작성합니다.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제출한 가족관계 인적정보가 전년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는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작성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4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5쪽)"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에는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확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어선원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신청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	-------	--------

※ (담당 공무원) 제출 서류를 토대로 지난 1년간의 승선 사실을 기록합니다

	⑤-1 근해어업 허가어선[]								⑤-2 연안어업 허가어선[]								⑤-3 구획어업 / 내수면어업 허가어선 []							
연 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협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협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 협가입	어선원 임금
합계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에 따른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관련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인		
-------------------------------------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 승선 어선의 어업허가대장	
신청인 승선 어선의 출입항신고자료	
신청인의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정보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 구성원의 개인별 종합소득 신고자료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어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탈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정보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 구성원의 농업공익직접지불금, 임업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 구성원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어선원, 어선원 외의 어업인, 그 밖에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어업허가대장 및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농업기본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직접지불금, 육림업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수령 정보 등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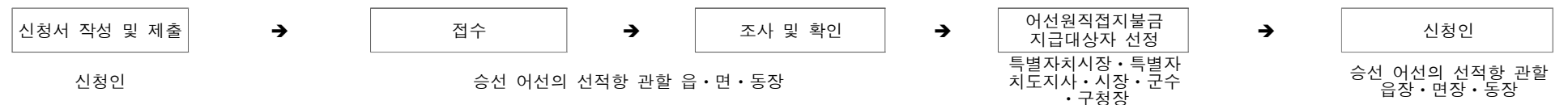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어선원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어선원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어선원, 어선원 외의 어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면허·어업허가·어선·어구·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어선원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어선원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임금 소득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 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는 2쪽 상단에 작성합니다.
- ②와 ③의 신청인인 어선원 외의 어업인 정보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이 작성합니다.
- ④란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는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2. 어선원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신청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내수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승선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 ⑤-1란은 신청인의 신청년도 직전년도 1년간 승선어선 중 근해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에 √ 표시를 하고, 관련 정보를 승선일자 순으로 작성합니다.
 - 근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선명,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 승선기간은 (0월 0일 ~ 0월 0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승선기간의 승선일수를 (00일)로 작성합니다.
 - 출입항실적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기간의 출입항 신고 자료의 제출, 확인 여부에 따라 ○, ×로 표시합니다.
 - 어선원재해보험가입 여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확인 여부에 따라 ○, ×로 표시합니다.
 - 어선원임금은 해당 승선기간의 선원임금 관련 자료의 제출, 확인 여부에 따라 ○, ×로 표시합니다.
- ⑤-2란은 신청인의 신청년도 직전년도 1년간 승선어선 중 연안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에 √ 표시를 하고, 관련 정보를 승선일자 순으로 작성합니다.
 - ⑤-1란의 근해어업 허가어선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⑤-3란은 신청인의 신청년도 직전년도 1년간 승선어선 중 구획어업 또는 내수면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에 √ 표시를 하고, 관련 정보를 승선일자 순으로 작성합니다.
 - ⑤-1란의 근해어업 허가어선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합계란은 각 어선별 승선일수를 모두 합하여 기재합니다.

3.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 확인사항은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이 읽어본 후 확인란에 √ 표시를 하고, 서명합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를 확인한 후 신청인 및 신청인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공통사항(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어업허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 의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1조의4에 따른 어선에 승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의 승선사실확인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선승선근로계약서, 어선원임금통장사본 등의 서류
- 2)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등)
- 3) 신청인이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에 의거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어업허가 관련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4)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 및 신청인 가구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5)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이 승선한 어선의 입항·출항 정보
- 6)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보
- 7)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확인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확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선 사실							
선명	어선번호	톤수	선적항	어업허가	승선기간 월 일 ~ 월 일 ()	어선원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	지급 어선원 임금 (천원)
합계					()		(천원)

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Γ_{H}
 $\Gamma_{\text{H}_2\text{O}}$
 Γ_{O}

확인자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후기

※ 확인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란에 V 표시합니다.

「수산업·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확인

확인자 (인)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1. 신청인 현황: 총 ○명

2. 지급대상자 명단: 총 ○명

연번	시·군·구	읍·면·동	생년월일	대표어선 어업종류	대표어선 선적항	연간 승선일수	관련 서류 확인						
							주민등록 등본	승선사실 확인서	어선출입항 신고서류	승선어선 관련서류	어업 경영체등록	어업외 종합소득 관련서류	기타

3. 지급제외자 명단: 총 ○명

연번	시·군·구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제외 사유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19조 각 호 및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7.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8.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지급대상 제외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외 사유

* 위의 지급대상자 제외 사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관할 읍·면·동장</u>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 ① ----- ----- ----- ----- ----- ----- ----- ----- ----- <u>특별자치도지사</u> 등-----.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u>읍·면·동장</u> 은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u>선정</u>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 ----- ----- ----- ----- <u>특별자치도지사</u> 등-----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특별</u>

결과를 통보받은 읍·면·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약정)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자치도지사등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약정) ① 법 제15조제3항

60세

조 및 제

11조의2에서

②

1.

인적사항 및 승계대상자
(배우자에 한한다)의 인적사
항

2. ~ 6. (생략)

<신설>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등) ① 경영이양직접지불
금 지급액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에 별표 1에 따른

2.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
정을 체결한 경우

2. 약정의 상대방이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
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
로 가입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
우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등) ① -----

----- 10년의 -----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 설>

---. 다만, 만 85세까지만 지급한다.

② -----
----- 지급기간 -----

--.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면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11조의2에 따른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분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2.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어업면허·허가·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이 규칙 제6조제3항제2호의 수산물 위판정보 및 어선 입항·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4.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어가의 수산물 판매실적(위판, 사매매(私賣買)) 자료

5.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6. 영 제11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어가 내 모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어업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영 제11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어업자 또는 내수면 어업허가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8. 영 제1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어가 내 모든 소규모어
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어선
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9. 영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어가 내 모든 소규모어가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
류

10.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1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의 구성원 중 법 제18조
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
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
로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
금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
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

<신 설>

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

<신 설>

<신 설>

정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를 통해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등) 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이 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승선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선정신청인이 동의하면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2.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선 승선 근로계약서, 어선원 임금 통장 사본 등 첨부 서류

3.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어선원 가구 내 모든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5.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6.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신청인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6(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6조의5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통보서로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7(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등) ①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이 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법 제18조의5제6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u>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 ----- ----- ----- ----- ----- -----.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u>통장</u>	1. ----- ----- ----- ----- <u>통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어촌계장</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